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1. 11. 23.(수)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09-30차 전원회의(2009.7.9), 제2010-1차 전원회의(2010.1.14), 제2011-17차 전원회의(2011.3.21)에서 의결한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에 해당됨

2] 의결사항

가.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이토마토 등 2개사 - (2011-65(서)-303)

-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제1항에 의거, (주)이토마토 등 2개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변경등록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변경등록 내용 >

신청법인	채널명	방송유형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주)이토마토	-	TV	방송분야	증권	부동산
			채널명	온토마토 (Ontomato)	부동산토마토 (Rtomato)
(주)에스엠브이	마운틴티브이 (MountainTV)	TV	방송분야	환경	다큐멘터리

나.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VTV 등 3개사 - (2011-65(서)-304)

- 「방송법」 제78조의2제1항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방송 재송신을 하고자 하는 VTV의 VTV 4 등 3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승인내용 >

외국방송 사업자명	방송채널명	국적	방송분야	방송언어
VTV	VTV 4	베트남	종합	베트남어
Al Jazeera Network	Al Jazeera English	카타르	뉴스	영어
Turner Broadcasting System Asia Pacific, INC	truTV	미국	오락	영어

< 승인조건 >

- ① 방송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예정일로부터 3월 전까지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국내 지사, 사무소, 대리인 또는 채널명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승인심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매년 3월 31일까지 직전 연도의 국내 송출현황 자료,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 현황 자료, 기여계획서상의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재송신 승인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이 개정되었을 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맞추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승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

- 방송내용이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때
-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방송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티브로드강서방송 등 94개사
- (2011-65(서)-305)

-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주)티브로드강서방송 등 9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설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사항	신청 주요내용
(주)티브로드 계열 22개사*	운용채널 및 시설 추가	미사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장비 추가 등
(주)씨제이헬로비전 계열 19개사*		
(주)씨앤엠 계열 18개사*		
(주)씨엠비 계열 9개사*		
(주)현대에이치씨앤 계열 8개사*		
대구케이블방송(주)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		
티씨앤대구방송(주)		
남인천방송(주)		
(주)한국케이블티브이광주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		
(주)아름방송네트워크		
(주)한국케이블티브이나라방송		
(주)강원방송		
(주)영서방송		
(주)충청방송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금강방송(주)		
(주)한국케이블티브이전북방송		
(주)한국케이블티브이호남방송		
하나방송(주)		
(주)서경방송		
(주)한국케이블티브이제주방송		

* 76개사 : (주)티브로드강서방송, (주)티브로드노원방송, (주)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주)티브로드 동대문방송, (주)티브로드서대문방송, (주)티브로드광진성동방송, (주)티브로드종로중구방송, (주)티브로드에이비씨방송, (주)티브로드한빛방송, (주)티브로드수원방송, (주)티브로드기남방송, (주)티브로드남동방송, (주)티브로드새롬방송, (주)티브로드서해방송, (주)티브로드대경방송, (주)티브로드대구방송, (주)티브로드낙동방송, (주)티브로드동남방송, (주)티브로드서부산방송, (주)티브로드전주방송, (주)티브로드중부방송, (주)동서디지털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주)씨제이헬로비전은평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드림시티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금정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 (주)한국케이블티브이포항방송, (주)신라케이블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 (주)씨앤엠, (주)씨앤엠중랑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송파

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중앙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서초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노원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동서울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마포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북부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서서울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용산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경동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경기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강남케이블티브이, (주)씨앤엠울산케이블티브이, (주)씨엠비한강케이블티브이, (주)씨엠비동서방송, (주)씨엠비대구동부방송, (주)씨엠비대구수성방송, (주)씨엠비대전방송, (주)씨엠비대전방송동대전지점, (주)씨엠비광주방송, (주)씨엠비광주방송동부지점, (주)씨엠비광주방송전남지점, (주)현대에이치씨엔서초방송, (주)현대에이치씨엔 동작방송, (주)현대에이치씨엔, (주)현대에이치씨엔부산방송, (주)현대에이치씨엔금호방송, (주)현대에이치씨엔새로넷방송, (주)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에 관한 건 - (주)홈앤쇼핑 등 6개사 - (2011-65(서)-306)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주)홈앤쇼핑 등 6개사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승인 사업자 현황 >

법인명	채널명	콘텐츠 공급분야	최초 승인일	대표자	편성 책임자
(주)조선방송	TV조선	종편	'11.3.30	오지철	장운택
(주)제이티비씨	jTBC	종편	'11.3.30	홍석현 / 남선현	주철환
(주)채널에이	채널A	종편	'11.4.20	유재홍	박희설
(주)매일방송	MBN	종편	'11.5.6	윤승진	장태연
(주)연합뉴스TV	뉴스Y	보도	'11.3.30	박정찬	김석진
(주)홈앤쇼핑	홈앤쇼핑	홈쇼핑	'11.6.23	이효림	이주세

< 승인내용 >

- (주)조선방송, (주)제이티비씨,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등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4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신청 건에 대해 신청 원안대로 승인한다.
- (주)연합뉴스TV의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신청 건에 대해 신청 원안대로 승인한다.
- (주)홈앤쇼핑의 상품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 승인신청 건에 대해 신청 원안대로 승인한다.
- 승인을 받은 상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및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1-65(서)-307)

- 제48차 위원회('11. 8. 31) 보고 후, 부처 협의 및 규제심사 과정 등을 거쳐 마련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부처협의 및 규제심사 과정 등에서 특이사항 없었음

○ 주요 내용

① 회계용어 변경(안 제5조)

- '11년부터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상의 회계용어를 반영하여 '대차 대조표'의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변경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에서는 명칭변경사항을 '10년에 반영

* '국제회계기준'(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자본시장 세계화에 대응하여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상장회사에 대해 '11년부터 적용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대체)

②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구분 폐지(안 제16조)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0.3)으로, 기간통신역무의 구분(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 받아 제공하는 역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도 이를 반영하여 기간통신역무 구분을 폐지함(제1항)

③ 지역별 회계분리 폐지(안 제18조)

- 무선호출서비스사업자의 지역별 경쟁상황 평가를 위해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을 두었으나, 현재 서울이동통신을 제외한 모든 무선호출사업자들이 사업을 폐지하여, 동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정을 폐지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에서는 지역별 회계분리 관련 규정을 '09년에 폐지

④ 향후 일정

- 법제처 심사 : 2011. 12월중
- 국무회의 상정 : 2011. 12월중